



#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쇼핑물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모든 실내, 변화가, 아울렛 물에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하는 쇼핑물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쇼핑물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한 쇼핑물 개장이 허용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100,000 평방피트 규모 이상의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을 보유한 쇼핑물의 실내 공용 구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입구가 없는 1단계와 2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운영하며 쇼핑물 정문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물 정문이 아닌 외부 출입구가 있는 상점(변화가 물, 앵커 태너트 등)은 1단계에서 커브사이드 및 실내 픽업, 2단계에서 모든 실내 소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Mall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쇼핑물 소유자/소유주/운영자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차인과 협력하여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수용 인원을 최대 점유율의 50 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들은 일행/가구 구성원/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반드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한 경우에만 쇼핑물 및 상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2세 이하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안전 또는 핵심 활동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금전 등록기 운영, 상품 이동 등)를 제외하고 직원과 고객 간 6피트의 거리를 확보합니다. 직원들은 다른 사람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고객과 접촉할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쇼핑물로 이동하는 사람의 흐름을 관리 및 통제하여 최대 수용 인원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밀집 또는 모임을 금지합니다.</li> <li>✓ 사람들의 이동을 관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준수하고 밀집하지 않도록 충분한 직원/보안 상태를 유지합니다.</li> <li>✓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변경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내의 공동 좌석 공간 운영 중단.</li> <li>• 셀프 서비스 바와 샘플러 운영 중단.</li> <li>• 분수 운영 중단.</li> </ul> </li> <li>✓ 발렛 서비스 일시 중단.</li> <li>✓ 배송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li> <li>✓ 2020년 8월 20일부터 책임 당사자는 제한적으로 푸드코트 좌석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좌석 공간 및 푸드코트 내에 위치한 식품 서비스 시설은 좌석이 있는 테이블 간 규정 거리 두기, 고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 인원 제한 등 DOH의 "<a href="#">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식품 서비스 임시 지침</a>(<a href="#">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a>)"을 준수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대인 접촉 및 밀집을 완화하고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선하도록 합니다.</li> <li>✓ 근무 공간 및 좌석 공간은 사방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조정하거나 그 수를 제한하십시오.</li> <li>✓ 테이프 또는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구역(출퇴근 기록 스테이션, 물 내 키오스크, 휴게실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커를 게시하고 쇼핑물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li> <li>✓ 일방 통행로를 만들거나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재조정합니다.</li> <li>✓ 내부 상점의 커브사이드 픽업 구역을 지정합니다.</li> <li>✓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지정합니다.</li> <li>✓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도록 상품 배송을 위한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한 배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보호 장비를 제공하십시오.</li> <li>✓ 고객이 터치리스 결제 옵션을 사용하거나 선결제하도록 유도하십시오.</li> </ul>



# 뉴욕 재개



NEW YORK STATE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쇼핑물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모든 실내, 변화가, 아울렛 물에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하는 **쇼핑물**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쇼핑물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한 쇼핑물 개장이 허용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100,000 평방피트 규모 이상의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을 보유한 쇼핑물의 실내 공용 구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입구가 없는 1단계와 2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운영하며 쇼핑물 정문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물 정문이 아닌 외부 출입구가 있는 상점(변화가 물, 앵커 태너트 등)은 1단계에서 커브사이드 및 실내 픽업, 2단계에서 모든 실내 소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중단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Mall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쇼핑물 소유자/소유주/운영자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b>공기 정화 및 건물 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완전히 폐쇄했던 건물로 돌아오기 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반송 전 검사, 작업 및 평가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기계 시스템, 수도 시스템, 승강기 및 HVAC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li> <li>✓ 규모가 800,000 평방피트 이상인 <b>쇼핑물</b>의 경우,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필터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현재 설치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등급 또는 고효율 입자 정화 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 등 업계 동일 수준 이상의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b>ASHRAE</b>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해야 합니다.</li> <li>✓ 규모가 800,000 평방피트 이상인 <b>쇼핑물</b>의 건물 HVAC 시스템 정화 등급이 MERV 13 등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정화 시스템(MERV 13등급 이상 등)을 설치하면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이전과 동일한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인증할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b>ASHRAE</b>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쇼핑물은 이러한 서류를 DOH에 제출하여 MERV 11등급 또는 MERV 12등급 등 낮은 수준의 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MERV 11등급의 건물 HVAC 시스템 정화 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li> <li>• 또한 MERV 13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할 수 없는 쇼핑물은 <b>CDC 권고</b>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가 800,000 평방피트 이상이며 건물 HVAC 시스템 정화 등급 MERV 13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b>쇼핑물</b> 및 800,000 평방피트 미만의 쇼핑물의 경우, <b>CDC 권고</b>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축 15년 이상인 건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수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li> <li>• 시스템 운영 시간 연장(가능한 경우 365일 24시간)</li> <li>• 가능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 유입을 증가하는 시스템 운영(콘퍼런스 또는 회의실 등).</li> <li>•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담퍼 개방.</li> <li>•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고려.</li> <li>•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li> <li>•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작동 상태와 필터 설치 상태, 서비스 및 잔여 사용 기간 확인.</li> </ul> </li> </ul> <p>(공기 정화 및 건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b>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b>"을 참조).</p>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쇼핑물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모든 실내, 변화가, 아울렛 물에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하는 쇼핑물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쇼핑물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한 쇼핑물 개장이 허용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100,000 평방피트 규모 이상의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을 보유한 쇼핑물의 실내 공용 구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입구가 없는 1단계와 2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운영하며 쇼핑물 정문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물 정문이 아닌 외부 출입구가 있는 상점(변화가 물, 앵커 태너트 등)은 1단계에서 커브사이드 및 실내 픽업, 2단계에서 모든 실내 소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중단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Mall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쇼핑물 소유자/소유주/운영자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공기 정화 및 건물 시스템(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수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li> <li>시스템 운영 시간 연장(가능한 경우 365일 24시간)</li> <li>가능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 유입을 증가하는 시스템 운영(콘퍼런스 또는 회의실 등).</li> <li>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덤퍼 개방.</li> <li>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고려.</li> <li>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li> <li>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작동 상태와 필터 설치 상태, 서비스 및 잔여 사용 기간 확인.</li> </ul> <p>✓ 규모가 800,000 평방피트 이하인 <b>쇼핑물</b>의 경우,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필터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현재 설치한 MERV 11등급 또는 HEPA 등급에 동등 수준 이상의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MERV 13등급을 설치하며 공인 HVAC 기술자, 전문가 8명 또는 회사, <a href="#">ASHRAE</a>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해야 합니다.</p>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은 다른 사람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고객과 접촉할 경우(고객에게 정보 제공, 구매 내역 입력 등)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li> <li>✓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작업 특성 상 더욱 엄격한 PPE(N95 인공 호흡기, 페이스 쉴드 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천 소재(수제 봉제, 릭 컷, 두건) 및 의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li> </ul>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쇼핑물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모든 실내, 변화가, 아울렛 물에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하는 쇼핑물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쇼핑물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한 쇼핑물 개장이 허용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100,000 평방피트 규모 이상의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을 보유한 쇼핑물의 실내 공용 구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입구가 없는 1단계와 2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운영하며 쇼핑물 정문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물 정문이 아닌 외부 출입구가 있는 상점(변화가 물, 앵커 태넨트 등)은 1단계에서 커브사이드 및 실내 픽업, 2단계에서 모든 실내 소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Mall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쇼핑물 소유자/소유주/운영자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보호 장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li> <li>✓ 고용주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는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li> <li>✓ 물체(도구, 레지스터, 차량 등)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과 접촉할 때는 장갑(업무 관련 또는 의료)을 착용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li> <li>✓ 직원이 식품을 취급하는 동안 장갑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li> </ul>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a> 및 <a href="#">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a>의 위생 및 보건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보관합니다.</li> <li>✓ 비누,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가 불가능/적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직원을 위한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li> <li>✓ 직원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쇼핑물 전역에 손 소독제를 배치해야 합니다.</li> <li>✓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하고, 쇼핑물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a href="#">제품</a>을 참조하십시오.</li> <li>✓ 상품 물품의 이송(트럭 운송 등) 전후 손 위생 조치를 취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 입구, 안내 키오스크, 매장 입구에 손 소독제를 배치합니다.</li> </ul>



# 뉴욕 재개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쇼핑물 지침

본 지침은 재개가 허용된 모든 실내, 변화가, 아울렛 물에 적용됩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하는 쇼핑물이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쇼핑물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재개 4단계 지역에 위치한 쇼핑물 개장이 허용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까지 100,000 평방피트 규모 이상의 임대 가능한 소매 공간을 보유한 쇼핑물의 실내 공용 구역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입구가 없는 1단계와 2단계의 커브사이드 픽업을 통해 운영하며 쇼핑물 정문 또는 인근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물 정문이 아닌 외부 출입구가 있는 상점(변화가 물, 앵커 태넨트 등)은 1단계에서 커브사이드 및 실내 픽업, 2단계에서 모든 실내 소매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핑물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Mall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모든 쇼핑물 소유자/소유주/운영자는 쇼핑물 운영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 등 물체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된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직원에게 장갑(업무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에게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li> </ul>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li> <li>✓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쇼핑물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li> <li>✓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해 보십시오.</li> </ul>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고객(고객 및 배송 인력은 의무 실시 대상 아님)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선별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li> <li>✓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근무지로 입장해서는 안 되며, 평가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li> <li>✓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인 경우 즉시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에게 통보하고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합니다.</li> <li>✓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화장실, 손잡이, 자동판매기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물에 통보하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격 선별(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li> <li>✓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임명한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고용주가 제공한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li> <li>✓ 체온 검사는 또한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li> <li>✓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고객을 제외하고(본인이 원할 경우 기록 보관 가능)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li> <li>✓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li> </ul>

WEAR A MASK.

GET TESTED.

SAVE LIVES.